

(주)영원무역 경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(주)영원무역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한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, 심의 및 결의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5조 (소집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,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 (소집 절차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 (부의사항)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경영에 관한 사항
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
- 나. 중요 인사정책 (채용 및 훈련포함) 및 상벌심의
- 다.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- 라.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와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

②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자기자본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투자에 관한 사항
- 나.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매출액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계약의 체결
- 다.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자산총액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자산의 취득
- 라.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자기자본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자금차입이나 보증행위
- 마.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자기자본의 1.0% 이상 2.5% 미만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기타 담보제공행위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1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4 장 기 타

제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